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정관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55 코스모화학(주)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50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동봉한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 기명날인하여 대리인이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7일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함 재 경 (직인 생략)

※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선물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부의 안건 참고자료

[제1호 의안 : 제50기(2017.01.01. ~ 2017.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내이사	허경수 (57.01.01)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前)LG전자 해외영업 이사 ・現)코스모신소재㈜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함재경 (58.05.24)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前)LG전자 GMO 전무 ・現)코스모화학㈜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김창수 (63.08.15)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前)㈜코스모앤컴퍼니 CFO ・現)코스모화학㈜ CFO	이사회	없음	없음
기타 비상무이사	임현성 (73.02.18)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졸업 ・KDI School 투자경영학 석사 ・現)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본부장	이사회	공동 대표이사	없음

※ 정관상 사내이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2017년	2018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명 (3명)	7명 (3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 이사의 수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 포함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7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②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는회사의설립.경영.해외영업또는기술혁신등에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임.직원으로하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 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 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는 제외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제7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② (현행과동일)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 관계인(*상법시행령제34조4항의특수관계인을말한다.이하같다.*)다만,당해법인의임원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그임원이계열회사의비상근임원인자를포함한다)는제외한다.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상법개정에 따른 내용수정